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드라마 접근 조정자 제도 도입 등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제도 도입(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3
2. 장애인 배우 및 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안 제12조의4 신설)	9
3. 장애인배우 출현 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2조의5 신설 등) ..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 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 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콘텐츠제작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비용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률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콘텐츠제작자가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함(제12조의4 신설).

마.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제도 도입(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로 하여금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드라마 접근 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② 정부가 장애인 드라마 접근 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국가가 장애인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하되 중복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재원의 확보) ①·② (생략)	제8조(재원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신설>	제12조의2(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장애인접근조정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휠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촬영 세트장 내 이동 보조 및 동선 확인 2. 장애인배우의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휴게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관리 3. 장애인배우와 콘텐츠제작자 등과 연출과정의 의사 및 의도 전달 등 소통 지원 4. 장애인배우의 촬영 시 심리적 안정 지원 5. 장애인배우의 장애 유형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 6. 위기 상황 발생 시 장애인배우의 안전 확보 등 전문적 조치 7. 그 밖에 장애인배우의 촬영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① 국가는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현행	개정안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비용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현행법”이라 함)¹⁾은 정부가 수립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로 하여금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 함)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장애인배우와 콘텐츠제작자 간 연출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함)를 두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② 정부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운영비,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제3항 신설),

③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콘텐츠 향유자를 넘어 능동적인 창작 주체로 세움으로써, 드라마 제작 현장의 물리적·소통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2조의2제1항은 장애인접근조정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콘텐츠제작자의 범위를 전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에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요구되는바²⁾, 제작 규모,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등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2) 국회사무처(2024), 「법제기준과 실제」, 33-38쪽.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콘텐츠제작자로 하여금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작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적 의무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 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②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의 세부 지출 항목을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③ 장애인 배우 출연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므로 과도한 인력과 예산이 소모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장애인 배우 및 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안 제12조의4 신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드라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며, 콘텐츠제작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4(장애인배우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드라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콘텐츠제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 등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

현행	개정안
	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추천 또는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드라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며, ③ 콘텐츠제작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추천

등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하도록 하고,
④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장애인배우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매칭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콘텐츠 출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제작 현장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2조의4제2항은 콘텐츠제작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배우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배우 섭외 등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지원의 내용이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정보 제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시 행정적 부담 완화 사항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정보 수집·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작자의 지원요청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 상황, 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행정의 유연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배우나 인력을 직접 추천하는 행위는 사실상 캐스팅과 고용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정보 수집·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콘텐츠 제작현장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배우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장애인배우 출연 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2조의5 신설 등)

개정안은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5(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시 장애인 출연 및 일상적 노출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내 장애인 가시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배우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장애인배우의 출연과 드라마 속 장애인의 노출을 늘리는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나, 가산점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 ‘장애인 출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같은 포괄적인 문안을 법안에 규정하고, 실무 지침 및 사업 공고를 통해 가산점 배점 등 방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